

#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 
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6년 9월 30일

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위원장

## 1.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

| 임용분야                    | 임용직급            | 임용인원 | 근무기간         | 근무부서         | 담당 직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소음·먼지<br>등 환경민원<br>처리분야 | 시간선택제<br>임기제 마급 | 1명   | 임용일로부터<br>1년 | 노원구<br>녹색환경과 | - 소음·먼지 등 행정지도·점검,<br>단속 및 관련 민원처리 업무<br>- 지도점검 관련 민원 상담 및 처리<br>-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모니터링<br>- 지도점검 차량 운행 및 관리<br>- 기타 부서장 지시사항 등 |

※ 근무 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시, 근무자의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

※ 근무기간은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

## 2. 법령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## 3. 응시 자격 요건

-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  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    - 지역·연령·성별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※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 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 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-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: 자격기준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| 응시자격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①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(필수)</p> <p>※ 실무경력 인정범위:<br/>대학대학원, 연구소, 정부 및 공공기관,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환경(대기, 수질, 소음, 진동)분야를 포함한 현장단속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 실무 경력</p> <p>② 제2종 운전면허 (보통)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하여 단속과 민원 처리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(필수)</p> <p>&lt;우대조건&gt;</p> <p>① 「국가기술훈련법」에 따른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(대기·소음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)</p> <p>② 직무관련 전공자(환경보건학과, 환경공학과 등)</p> <p>③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사람(컴퓨터활용능력, 정보기술자격, 워드프로세서 등 자격증 소지자)</p> |

- ※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 및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(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, 명확하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)
- 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
## 4.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

- 근무조건: 주 5일(월~금), 1일 7시간(09:00~17:00) 근무
- ※ 근무환경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
- 보수 수준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의 주35시간 근무 비례 적용하여,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(2026년 기준)

| 구 분         | 하한액   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| 25,325천원 | 임기제 9급(상당) 하한액(28,943천원)의 주35시간 비례 책정 |

- 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: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,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(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)

## 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### 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6. 10. 7.(수) ~ 10. 13.(화) / (7일간)
- 접수방법: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
  - 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,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
  - 방문접수 시간: 09:00 ~ 18:00 [점심시간(12:00 ~ 13:00) 제외]
- 접 수 처: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팀
  - 우편 및 방문 접수 주소: (우편번호 01689)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5 (상계동), MG노원빌딩 9층 녹색환경과 생활환경팀
- 주의사항
  -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 - 접수 마감일까지의 노원구 수입증지(응시수수료)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  -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  -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(서류 분실 방지 목적)

### ○ 시험일정

| 구 분         | 일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 소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험공고        | 2026. 9. 30.(수) ~ 10. 12.(월)     | 노원구 홈페이지(채용공고) 게시           |
| 응시원서 접수     | 2026. 10. 7.(수) ~ 10. 13.(화)     | 우편 및 방문 접수                  |
|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 2026. 10. 20.(화)                 | 개별통보 및<br>노원구 홈페이지(채용공고) 게시 |
| 면접시험        | 2026. 10월 말<br>※ 면접시험 계획 공고 예정   | 개별통보 및<br>노원구 홈페이지(채용공고) 게시 |
|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| 2026. 10월 말<br>※ 면접시험 계획 공고 예정   | 개별통보 및<br>노원구 홈페이지(채용공고) 게시 |
| 최종합격자 발표    | 2026. 11월 말<br>※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 | 개별통보 및<br>노원구 홈페이지(채용공고) 게시 |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
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## ○ 시험방법

### 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 : 개별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(재용공고) 게시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

### 나. 2차 시험(면접시험) : 개별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(재용공고) 게시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, 개별심층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.

## ○ 최종합격자 발표: 개별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(재용공고) 게시
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
## 6. 제출서류

### 가. 공통사항(필수사항)

#### ○ 응시 원서(첨부 1) 1부

- 응시 수수료: 5,000원 [마급(9급상당)]
- 응시 원서에 노원구 수입증지(노원구청 2층 재무과에서 수입증지 구입) 부착

※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.

#### ○ 이력서(첨부 2) 1부

-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- 자기소개서(첨부 3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첨부 4) 1부
-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(첨부 5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 6)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첨부 7) 또는 주민등록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-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(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)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    - 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[첨부9]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 추가 제출
  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 제출
- 응시자격 관련 운전면허증 1부
- (우대사항)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1부
 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    - ※ 직무관련 전공자(환경보건학과, 환경공학과) 확인이 안될 경우 [첨부8] '동일계통학과 증명서' 추가 제출
    - ※ 사본 제출 가능
- (우대사항)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등 1부
  - 직무분야 자격증 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
- 기타 이력서·자기소개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

※ 참고

- 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인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▶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▶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),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\* ①, ②모두 제출
  - \*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개 선택

※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(국세청 홈택스)

-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
  - 국세청 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/>) 접속 →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→ **사실증명(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이 정보내역)**
-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
  - 국세청 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/>) 접속 →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 → 즉시발급 증명 → 소득금액증명 → **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**
  -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· 관련 문의 : 국세청 (☎126)

## 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,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,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노원구 누리집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.
- 문의: 노원구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팀(02-2116-3207)

붙임 응시자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1부.(따로 붙임)